

예 산 총 칙

제1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866,909,437	741,304,745	125,604,692
일 반 회 계	798,734,566	684,976,484	113,758,082
특 별 회 계	68,174,871	56,328,261	11,846,610
기타특별회계	13,731,630	10,315,056	3,416,574
의료보호비	2,606,944	2,294,669	312,275
수질개선	161,326	146,552	14,774
주민소득지원	2,009,884	828,730	1,181,154
기반시설	165,050	0	165,0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26,496	500,000	526,496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7,348,025	6,233,002	1,115,023
산업단지조성사업	413,905	312,103	101,802
공기업특별회계	54,443,241	46,013,205	8,430,036
상수도사업	22,270,860	20,227,986	2,042,874
하수도사업	32,172,381	25,785,219	6,387,162

제2조 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예산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940,984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